

협력회사 등록·운용 실천사항



1. 목적

본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협력회사 등록·운용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당사의 협력회사 등록 및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협력회사”라 함은 (주)티에스이의 제조 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2 “협력회사 등록”이라 함은 (주)티에스이의 협력회사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2.3 “협력회사 운용”이라 함은 (주)티에스이가 협력회사로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 회사 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협력회사 등록 운용 실천사항

3.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주)티에스이의 협력회사 등록 및 협력회사 관리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술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2 협력회사 등록 운용 실천사항

1) 협력회사 등록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회사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 또는 갱신 심사 개시 30일전에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2) 협력회사 등록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 (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 한다.
- (3) 협력회사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 한다.

2) 등록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회사 등록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등록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회사 등록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등록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정당한 등록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부당한 등록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등록기준으로 하는 경우
 -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회사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2) 협력회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 (3)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회사 등록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 한다.
- (4)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4)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회사로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5)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협력회사 등록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당사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6)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한다.
1.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 ① 품질 및 납기, 가격, 협력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② 공급품목 단종으로 향후 지속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 ③ 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 ④ 부도, 채권압류, 휴업, 만성 노사분규,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속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 ⑤ 협력업체 정기 평가결과가 부진하여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⑦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
 -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 하는 경우
 -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회사로 중복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③ 협력회사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다만, 협력회사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 ④ 협력회사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7)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 (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한다.